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1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행정기획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17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²⁾에 의거하여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 황

- 1981년 준공된 건물로 내용연수 40년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
- 길음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 완료시기로 행정수요 증가와 신길음구역 사업 추진에 따라 현 주민자치센터 철거 필요

1)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

○ 신축계획 변경

구분	현 청사 현황	신길음구역(당초)	길음1축진구역(변경)
위치	길음동 1064-1 (길음동 1064-3, 5 재활용센터)	신길음지구 구역내 (공용청사 예정지)	길음1축진지구 구역내 공공용지③ ³⁾
대지	대지면적 : 270.01㎡	대지면적 : 557.2㎡	대지면적 : 1,284㎡
건축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 506.99㎡)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 1,980㎡)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2,310㎡)

○ 시설조성 계획(안)

구분	내 용			
위 치	성북구 길음동 1059 일대			
규 모	토지 1,248.2㎡, 건물 연면적 2,170.3㎡(지하 1층 / 지상 4층)			
시설규모	지상4층	프로그램실, 동아리 활동실 등		
	지상3층	다목적실(대강당) 등		
	지상2층	회의실, 휴게실, 북카페, 동장실 등		
	지상1층	민원실, 상담실 및 주민등록실		
	지하1층	주차장 등		
사업비	공사비	신축	6,788,000	총 공사비 7,713,000 천원
	설비비	자산취득비(운영물품 등)	37,000	
	용역비	설계, 감리 등	813,000	
	기타부대비	청사이전비 등	75,000	

※ 세부 공간구성은 추후 공사 기본·실시 설계 시 다양한 의견 반영

3) 길음1축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

○ 예산조치(안)

- 2022년 : 2022년 기금편성(설계비 등) 확보 예정
- 2023년 : 2023년 기금편성(공사비 등) 확보 예정
- 2024년 : 2024년 기금편성(기타 부대비 등) 확보 및 건물 준공 예정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구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금 액(천원)	비 고
취득	길음동 1059 일대	건물	2,170.3㎡	7,713,000	신축
		합계		7,713,000	

※ 길음1축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 활용

라. 향후 추진 일정

- 2021. 11월 :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설계용역 의뢰
- 2022. 09월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 2023. 04월 : 건축공사 착공
- 2024. 12월 : 건축공사 준공(개관식 포함)

4. 검토의견

길음2동 주민센터는 1981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및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주민센터 사용면적은 507㎡(치안센터 89㎡ 포함, 실제 사용면적 418㎡)으로 매우 협소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수요인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한계가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